KOSHA GUIDE

H - 70 - 2020

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지침

2020. 12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박희련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총괄본부 법정사업부

- 제·개정 경과
- 2009년 4월 산업보건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9년 5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4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)
- 2018년 10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)
- 2019년 9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20년 11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OSHA: 29CFR1926.1101 Subpart Z Toxic and Hazardous Substance
- EPA: 40CFR763 Subpart E Asbestos-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35호(보호구 안전인증 고시) 별표8의2(화학 물질용 보호복의 성능기준) 5형식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(석면 해체·제거 작업기준의 준수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6절(석면 제조·사용 작업, 해체·제거작업 및 유지·관리 등의 조치기준) 제 477조 내지 제 497조의 3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  - 이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,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0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석면해체·제거 작업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'안전보건규칙'이라 한다) 제2장, 제6절(석면의 제조·사용 작업, 해체·제거 작업 및 유지·관리 등의 조치기준) 제477조 내지 제497조의3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석면의 해체·제거작업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·제거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주와 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3.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1) "석면"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(硅酸鹽) 광물류로서 악티노라이트석면, 안소필라이트석면, 트레모라이트석면, 청석면, 갈석면, 백석면 등 여섯 종의 물질을 말한다.
  - (2) "석면함유물질"이라 함은 석면이 중량기준 1 % 초과 함유된 물질을 말한다.
  - (3) "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"이라 함은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 및 건축물을 말한다.
  - (4) "분무된 석면"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내외부에 내화, 흡음, 단열, 장식 및 기타 용도를 위해 분무·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입혀진 석면을 말한다.
- (5) "보온재"라 함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파이프, 덕트, 보일러, 탱크 등의 내·외부에 보온·단열을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을 말한다.

- (6) "내화피복재"라 함은 높은 온도에서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물질의 표면에 덮어씌우는 물질을 말한다.
- (7) "석면해체·제거작업"이라 함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, 개·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거나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말한다.
- (8) "고성능필터(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: HEPA filter)"라 함은 0.3 세의 입자를 99.97 % 포집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필터를 말한다.
- (9) "음압기"라 함은 고성능필터가 달린 팬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 공기를 일정 유량으로 배기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공간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.
- (10) "음압기록장치"라 함은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공간 내외부의 압력 차이를 측정·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.
- (11) "사업주"라 함은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설비나 건축물의 해체·제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- (12) "글로브 백 작업(Glove bag operation)"이라 함은 폴리에틸렌 등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사용하며 안쪽으로 손 모양의 글로브에 손을 넣어서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3.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4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범위

4.1 분무된 석면의 해체·제거작업

철 구조물의 내화재로 빔, 기둥,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된 것과 장식목적의 마감재 또는 천장의 방음단열재로 분무된 석면 등을 해체·제거하는 작업

4.2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·제거작업

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,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로, 전기로 등의 설비에 보온·단열성 및 내화성을 주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및 내화피복재 등을 붙이거나 코팅된 것을 해체·제거하는 작업

4.3 석면이 함유된 벽체.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·제거작업

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, 바닥타일, 천장재 등으로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각종 건축자재 등을 해체·제거하는 작업

4.4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·제거작업

지붕재로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팔트 휄트 및 루핑 등의 방수시트를 적층한 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, 슬레이트 등을 해체·제거하는 작업

4.5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·제거작업

보일러, 용광로 및 전기로 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, 고압의 스팀 라인에 설치된 가스켓, 석면 링, 펌프 및 밸브의 팩킹재 등을 해체·제거하는 작업

# 5. 석면해체·제거작업 전 준비사항

- 5.1 석면해체·제거작업계획 수립
  - (1) 석면해체·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
  - (가)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
  - (나)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
  - (다)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

사전조사결과 해체·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, 작업 순서 및 작업방법 등의 해체·제거방법

(라) 석면 비산방지 및 처리방법

#### KOSHA GUIDE

H - 70 - 2020

- ① 해체·제거작업과정 중 밀폐, 격리, 음압유지 시스템, 습식작업, 진공청소 등의 석면 비산방지방법
- ② 해체·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,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방법

#### (마) 근로자 보호조치

해체·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보호구, 보호복, 보안경(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)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

#### (바) 기타사항

지정폐기물처리,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,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

#### (2) 작업계획의 주지

- (가) 사업주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,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.
- (나) 사업주는 당해작업 근로자 외에 석면해체·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·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.

#### 5.2 경고표지의 설치

- (1) 사업주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<별지1>의 경고표지를 출입 구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(2) 다만,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(3) 또한, 석면해체·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표지 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.

#### 5.3 개인보호구의 지급·착용

- (1) 사업주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(특등급만 해당)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(방진마스크, 특등급만 해당), 고글형 보호안경,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및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호흡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가) 밀착도 자가점검(fit-check)방법
- (나)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방법
- (다) 사용방법
- (라) 유지관리방법
- (마)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
- (바) 보호구의 사용제한
- (3) 사업주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, 보호복 및 보호신발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5.4 석면해체·제거 장비 및 보호구
  - (1) 음압기
  - (가) 고성능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.
  - (나) 전처리 필터를 고성능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다) 필터 차압 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라)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.
  - (마)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바) 이동시 음압기 내·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 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  - (2) 음압기록장치

- (가) 측정 감도는 0.01 mmH<sub>2</sub>O 이하일 것
- (나)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자료 저장용량을 가질 것
- (다)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작업장소과 외부와의 압력차가 0.508 mmH₂O이하 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
- (라)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(Zero point)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
- (마)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

# (3) 진공청소기

- (가) 고성능필터를 장착해야 한다.
- (나)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다)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.

#### (4) 호흡보호구

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.

#### (5) 보호복

- (가) 보호복은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, 허리, 손목,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복이여야 한다.
- (나) 습식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.
- (다)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.
- (라) 지퍼 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, 석면 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.
- (마)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, 테이핑 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.

#### 5.5 위생설비의 설치

- (1) 사업주는 석면해체·제거 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, 샤워실 및 보호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주가 실내의 석면 해체·제거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.
- (가)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→ 샤워실 → 보호복 갱의실 →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각 실의 연결 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폴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다) 샤워실은 온·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.

#### (3) 작업전 출입순서

- (가)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복을 착용하고 호흡보호구를 검사 후 착용한다.
- (나) 샤워실을 통해 갱의실로 들어가되,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지 않는다.
- (다) 보호복 갱의실에서 안전모, 보호신발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.
- (라) 작업장소로 들어간다.

#### (4) 작업 후 출입순서

- (가)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.
- (나) 보호복 갱의실로 들어가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일회용 보호복을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.
- (다) 샤워실로 들어가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샤워하고 재활용할 보호장구와 호흡보호구를 세척한다. 그 후 호흡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 한다.

- (라)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.
- (5) 기타 해체·제거작업,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, 샤워실,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- (가)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. 그러나 옥외 작업에서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된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- (나) 다만, 위생설비가 분리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보호복 및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 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사업주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개인보호구 등은 보호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5.6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시 금지사항

- (1)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
- (2) 압축공기 사용
- (3)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

#### 5.7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

- (1)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다.
- (2) 근로자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·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된다.

#### 5.8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

(1) 사업주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 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(2) 사업주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 및 제 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<별지 2>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## 6. 석면해체·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

#### 6.1 공통 조치사항

- (1)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.
  - (가) 해체·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, 환기 덕트의 개방부위,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.
  - (나) 작업지역은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시키되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다)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,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.
  - (라)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장소를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밀폐 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(가) 실내 작업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,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는다. 바닥은 비닐(두께 0.15mm 이상) 두겹 이상, 벽면은 비닐(두께 0.08mm 이상) 한겹 이상으로 보양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(나) 작업장소와 외부의 압력차가 0.508 mmH<sub>2</sub>O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① 음압측정은 작업자의 출입·이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, 음압기와 가까울수록 높게 측정된다.
  - ②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.

- (다) 음압은 음압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측정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.
- (라) 음압장치에는 작업장소 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마) 시스템 내 공기흐름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으로부터 고성능필터 또는 분진 포집장치 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바) 작업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.
- (사) 음압유지를 확인하는 방법
  -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한다.
  - ② 스모크 테스트 튜브(smoke test tube)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·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 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다.
  - ③ 음압기록장치로 작업장소와 외부의 압력차가  $0.508 \text{ mmH}_2\text{O}$  이상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.
- (아) 해체·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.
- (3)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가) 해체·제거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 한 후에 작업하여야 하고, 작업 중에도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나)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·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(이동식 코드릴)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한다.

- (5)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 바닥재에 축적된 석면 부스러기 또는 분진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에 불침투성 습윤천 (drop cloths)을 깔아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6.2. 석면해체·제거 작업별 조치사항
  - (1)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·제거작업
  - (가) 작업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(방진마스크, 특등급에 한함)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.
  - (나)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·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 백 작업이 권장된다.
  - ① 음압밀폐시스템과 병행하여 석면분진의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파이프에 도포된 단열재를 해체·제거하는 작업에 글로브 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 - ② 글로브 백 작업은 다음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.
    - ⑦ 제거하고자하는 파이프관의 단열재 주위를 글로브 백으로 파이프관의 하부로부터 상부로 감싼 후 상부 및 백의 양 측면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한다.
    - ① 밀봉하기 전에 글로브 백 내에 해체·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등을 넣어야 한다.
    - ⓒ 글로브에 손을 넣어 해체·제거되는 단열재 등 석면함유물질을 먼저 물 또는 습윤액를 사용하여 습윤화하고 늘어져 있는 글로브 백에 떨어뜨려 저장한다.
  - ② 필요하다면 글로브 백의 일정한 구멍을 통해 스프레이 노즐을 집어넣어 해체·제거되는 단열재를 수시로 습윤화 한다.
  - 한 해당 장소에서 해체·제거작업이 완료되면, 늘어져 있는 아래 부분을 비틀어서 테이프로 감싼다. 상단부분에 고성능 필터 장착 진공청소기의 흡입구를 넣어 상단부분의 내부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여 석면먼지를 제거한 후 젖은 걸레로 석면함유물질이 제거 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고착제로 도포한다.
  - 늘어져 있는 글로브 백이 해체·제거된 석면함유물질로 가득 차면 글로브

백의 내부 표면을 물로 세척하고 파이프 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완전 밀폐한 후에 다른 글로브 백에 넣는다.

- 씨 글로브 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 처리한다.
- (2) 석면이 함유된 벽체,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·제거작업
- (가)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 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 절삭 디스크 톱, 도끼,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 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작업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(특등급만 해당)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(방진마스크, 특등급만 해당)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.
  - 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(고글)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.
  - ② 석면이 함유된 벽체,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·제거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 (방진마스크, 특등급만 해당)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(특등급만 해당)의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.
- (다) 석면함유 벽체, 바닥타일,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.
- (라) 해체·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, 연마,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.
- (3)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·제거작업
  - (가) 지붕재 해체·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,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.
  - (나) 지붕재의 해체·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에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부위는 밀폐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.
  - (다) 작업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(특등급만 해당)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(방진마스크, 특등급만 해당)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.

- 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(고글)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.
- ②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·제거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(방진마스크, 특등급만 해당)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(특등급만 해당)의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.
- (4)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·제거작업
  - (가) 해체·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.
    - ①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·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체·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유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하여야 한다.
    - ② 특히 가스켓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 습식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  - (나)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·제거작업은 가능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절단,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.
  - (다) 작업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(특등급만 해당)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(방진마스크, 특등급만 해당)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.
    - 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(고글)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.
    - ②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·제거작업은 다른 석면 해체·제거작업에 비하여 낮은 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하므로 반면형 방진 마스크를 지급·착용하여도 좋으나,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 분진이 발생될 수 있다면 송기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(방진마스크, 특등급만 해당)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(특등급만 해당)의 지급과 착용이 권장된다.

#### 7. 석면의 제거·청소 및 처리 시 유의사항

- 7.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하면 제거 전에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.
- 7.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~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 하도록 한다. 단,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 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.
- 7.3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하여야 한다.
- 7.4 바닥시트,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·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 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.
- 7.5 석면폐기물을 청소,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가능하다면 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.
- 7.6 습식작업 시 사용되는 전기 공구 및 장비는 감전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7.7 석면해체·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,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하며,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청소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.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 한다.
- 7.8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위해 밀폐,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- 7.9 바닥시트는 습윤화 하여 접어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.
- 7.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. 다만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.
- 7.11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프리필터(prefilter) 및 고성능 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.
- 7.12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복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.

- 7.13 폐기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.
- (1) 분진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.
- (2)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3)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된다.
- (4)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7.14 폐기처리용 용기는 0.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가 권장되고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.
- 7.15 0.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.
- 7.16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, 벽, 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다.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.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.

< 별지 1 > 석면취급/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

# 관계자외 출입금지

석면 취급/해체 중

보호구/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

- 주) 1.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, 세로 50센티미터 이상
  - 2. "관계자외 출입금지"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, 세로 10센티미터 이상
  - 3.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, 세로 6센티미터 이상
  - 4.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, 다만 "석면 취급/해체 중" 글자는 적색

KOSHA GUIDE

H - 70 - 2020

< 별지 2 >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

#### 1. 양 식

# 석 면 함 유





신 호 어: 발암성물질

유해·위험성: 폐암, 악성중피종, 석면폐 등

예방조치 문구: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. 공급자 정보:

※ "공급자 정보"에는 석면해체·제거 사업주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
# 2. 규 격

규 격

300㎡(가로×세로) 이상 (0.25×세로)≤가로≤(4×세로)